## 대학혁신지원사업운영규정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육부에서 지원 동명대학교(이하 '본 대학교'라 한다) 대학혁신지원사업 (이하 '사업'이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① 이 규정은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지방대학활성화사업(이하 "3유형 사업'이라 한다)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. (개정 2023.09.01.)
  -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 훈령 「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」을 따른다. (신설 2023.09.01.)
- 제3조(사업기간) 사업기간은 본 대학교와 한국연구재단과의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.
- 제4조(권한과 책임) 총장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.
  - 1.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
  - 2. 사업의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에 대한 종합 관리·지원
  - 3.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, 재정적 제도의 정비
  - 4. 사업비의 총괄적인 집행 및 관리
  - 5. 본 사업 관련 규정 및 협약사항 준수
  - 6.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
  - 7. 사업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
  - 8. 그 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
- 제5조(조직) ① 본 사업의 관리부서는 기획처 <u>대학혁신실 재정혁신팀</u>으로 한다. (<u>개정</u> 2020.10.1., 2021.6.1.,2022.4.1., 2022.10.1., **2023.9.1.**)
  - ② 기획처장은 사업총괄책임자로서 사업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. (개정 2021.6.1.)
  - ③ 사업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    - 1.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총괄
    - 2. 사업실적 및 성과관리 총괄
    - 3. 그 밖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
  - ④ <u>대학혁신실</u>은 사업 운영지원, 사업비 관리 및 집행, 세부사업을 수행한다. (<u>개정</u> 2020.10.1., 2021.6.1., **2023.9.1.**)
  - ⑤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<u>대학혁신실</u> 또는 세부사업 실행부서에 교원 또는 직원(일반계약 직원, 연구계약직원 포함)을 둘 수 있으며,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(<u>개정</u> 2020.10.1., 2021.6.1., **2023.9.1.**)
- 제6조(대학혁신운영위원회) ① 사업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혁신운영위원회(이하 "운

영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(개정 2023.1.30.)

-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하고,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(개정 2021.6.1., 2023.1.30.)
- ③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는 교무위원급인 교무처장, 학생처장, 입학홍보처장, 사무처장, **대학혁신실장,** 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외부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. (개정 2020.10.1., 2021.6.1.,2022.4.1., 2022.10.1., 2023.1.30., **2023.09.01.**)
- ④ 위원의 임기는 사업기간으로 하되, 당연직 의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 (개정 2023.1.30.)
-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(개정 2023.1.30.)
  - 1.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심의
  - 2. 대학혁신지원사업운영규정 및 사업비 집행지침 제·개정
  - 3. 사업비 예·결산 심의
  - 4. 자체평가 결과 심의 및 환류에 관한 사항
  - 5. 사업 시행과정과 성과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
  - 6. 그 밖에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7조(대학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위원회) ① 사업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환류하기 위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위원회(이하 "자체평가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(개정 2023.1.30.)
  - ② 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하고, 교직원, 재학생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(개정 2021.6.1., 2023.1.30.)
  - ③ 자체평가위원회는 LINC3.0 사업단장, SW중심대학사업단장, <u>대학혁신실장</u>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당연직 이외의 재직 중인 교직원, 재학생 및 외부 전문가는 총장이 위촉한다. (<u>개정</u> 2020.10.1., 2021.6.1.,2022.4.1., 2022.10.1., 2023.1.30., **2023.09.01.**)
  - ④ 위원의 임기는 사업기간으로 하되, 당연직 의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  - ⑤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(개정 2023.1.30.)
    - 1. 사업성과 및 실적평가를 위한 자체평가 계획 수립 및 시행
    - 2. 성과목표 달성 여부 및 사업 추진 실적 분석
    - 3. 자체평가 결과 부진사항 또는 운영상의 문제점 분석 및 조치계획 수립
    - 4.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 확산
    - 5. 그 밖에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  - ⑥ 자체평가위원회는 연차평가, 종합평가 실시 전에 연 2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 (개정 2023.1.30.)
  -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7조의2(Well-Life 특성화 자체평가위원회) ① 3유형 사업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환류하기 위하여 Well-Life 특성화 자체평가위원회(이하 "특성화 자체평가위원회"라 한다)를 둔

다.

- ② 특성화 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하며, 대학혁신실장, 보건복지교육대학장, 반려동물대학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당연직 이외의 교직원, 재학생 및 외부 전문가는 총장이 위촉하다.
- ③ 그 밖에 특성화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에 따른다. [본조 신설 2023.09.01.]
- 제7조의3(학생중심위원회) ①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학생 중심으로 구성된 학생중심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- ② 학생중심위원회의 명칭, 목적 및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생중심위원회 구성 시 사업 총괄책임자가 따로 정한다.

[본조 신설 2023.09.01.]

- 제8조(대학혁신지원사업 실행위원회) ①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세부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학혁신지 원사업 실행위원회(이하 "실행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(개정 2023.1.30.)
  - ②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혁신실장으로 한다. (개정 2020.10.1., 2023.1.30., 2023.9.1.)
  - ③ 위원은 부서별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전담하는 교원 및 직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④ 실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 (개정 2023.1.30.)
    - 1. 세부사업별 사업계획서, 연차보고서 및 자체평가보고서 작성
    - 2. 프로그램 추진계획 및 예산계획 수립
    - 3. 프로그램간 연계 및 활성화 방안 수립
    - 4. 프로그램의 결과보고서 작성
    - 5. 세부사업 진행 진단 및 사업비 집행 현황 정기점검
- 제9조(사업 관리) ①사업비는 사업계획서에 편성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, 운영비의 일부를 다른 회계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.
  - ② 사업비 집행은 교육부 훈령 「대학혁신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」, 한국연구재단 「대학혁신지원 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」 및 대학의 예산·회계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른다.
  - ③ 사업을 위해 채용된 교직원 및 사업 프로그램 참여 교직원에게 사업 수행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지급기준은 성과급 지급지침을 따른다. (개정 2023.1.30.)
  - ④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시 구성원의 의견수렴(설명회, FGI, 수요조사 및 만족도 조사, 워크숍 등)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.
- 제10조(운영경비 및 수당지급)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 및 외부위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 (개정 2023.1.30.)
- 제11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대학의 규정은 준용하며 그 밖에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. (개정 2023.1.30.)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규정의 폐지)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「대학혁신지원사업단운영규정」은 폐지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본 대학교에서 이 규정 시행 전「대학혁신지원사업단운영규정」에 의거하여 시행한 대학혁신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<u>부 칙</u>

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